

## 9. 都市計画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24號 1992.12.23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중 “주택”을 각각 “건축물”로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썩·우렁이등의 사육장:썩·우렁이 또는 달팽이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의 증축: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1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나목중 “기존부속건축물의 면적(가 목의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를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

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다만, 이를 지하층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는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제7조 제1항제3호 사목(2)목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인근대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부터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인근부락안의 대지(개발제한구역의 지

정전부터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이  
축되는 주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아목·허목·보목 및 두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  
는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공  
중화장실·33제곱미터이하의 간이휴  
게소, 철봉·평행봉등 체력 단련시설  
과 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  
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시공원  
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간이 골프장·  
골프연습장·대중음식점 및 유스호스  
텔을 제외한다.)

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  
양시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  
는 젖소개량사업을 위한 시설 및 한  
국마사회가 당해 부지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철봉·평행봉등의 체력단련  
시설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배구장  
·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  
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

설

제7조 제1항제4호나목중 “새마을회관”을  
“마을공동회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존 정미소(개인소유도 포함한다)  
의 증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창고  
의 신축·증축

제7조 제1항제5호나목중 “종업원 50인이  
상 규모의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를  
“공장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종  
업원이 50인이상인 공장 부대시설의  
설치”로 한다.

제7조 제1항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골재채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  
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  
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안에서 바다  
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작물

제7조 제1항제6호다목(1)중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6호다목(2)중 “간이음식점·  
대중음식점”을 “대중음식점”으로 하  
고, 동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중 대중음식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한다.

제7조 제1항제6호다목에(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서로 간의 용도변경

제7조 제1항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시장·군수가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가지안에 있는 연탄공장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는 연탄공장 및 그 부대시설

제7조 제1항제6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조정경기장 안에 설치하는 경정장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제4호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동조제 5호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 제14호중 “제7조제1항제3호가목·라목”을 “제7조제1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8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 형질변경(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 변경에 한한다.)

제9조 제1호중 “132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90제곱미터로 한다”를 “최소대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조 제3호중 “2배이내”를 “2배(측사는 3배)이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용기준(제7조제1항 제6호 다목관련)

1. 집단으로 형성된 부락안의 건축물로서 임야 또는 하천에 연접하여 있지 아니할 것
2. 용도변경의 범위는 단위부락 호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호수이내일 것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일 것

4.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이상의 공지가있을 것. 다만, 당해 건축물의 인근에 있는 다른 주차장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축사·창고등 비위생적인 건축물이 있지 아니할 것

6.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평·우렁이등의 사육장과 도시공원시설 및 체력단련시설등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는 등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관통하는 경우 당해 부지에서는 인접용도지역에 준하여 증축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단서).

나. 1가구당 300제곱미터이하의 평·우렁이등의 사육장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 하목).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인근부락의 대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제3호 사목).

라. 개발제한구역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외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도시 공원시설과 체력단련시설·운동시설등을 허용함(제7조제1항제3호 허목 및 무목).

- 마.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안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함(제7조제1항제5호자목).
- 바.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진이 불가피한 시가지안의 연탄공장을 개발제한구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제6호 바목).
- 사. 개발제한구역인 상습침수지역안에 있는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용함(제8조제21호).
- 아.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을 현재의 132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함(제9조제1호).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